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lledu.nile.or.kr | 1577-3867

평 생 교 육 을

이 끄 는



사 람 들

평 생 교 육 사

목차



I.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사의 직무 | 평생교육사의 활동영역

II.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이해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변천사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III.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방법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 자격증 재발급 신청방법

IV. 자주하는 질문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의 현장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기업 등
우리 가까이에

학습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13만 명의 평생교육사가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의 동반자로서

평생교육사 양성에 함께 합니다.

평생교육을 이끄는 사람들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안내자료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안내자료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I.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입니다.



※참고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7). 평생교육사의 직무분석과 대학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의 효율화 방안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1). ISSUE PAPER 평생교육사 배치활성화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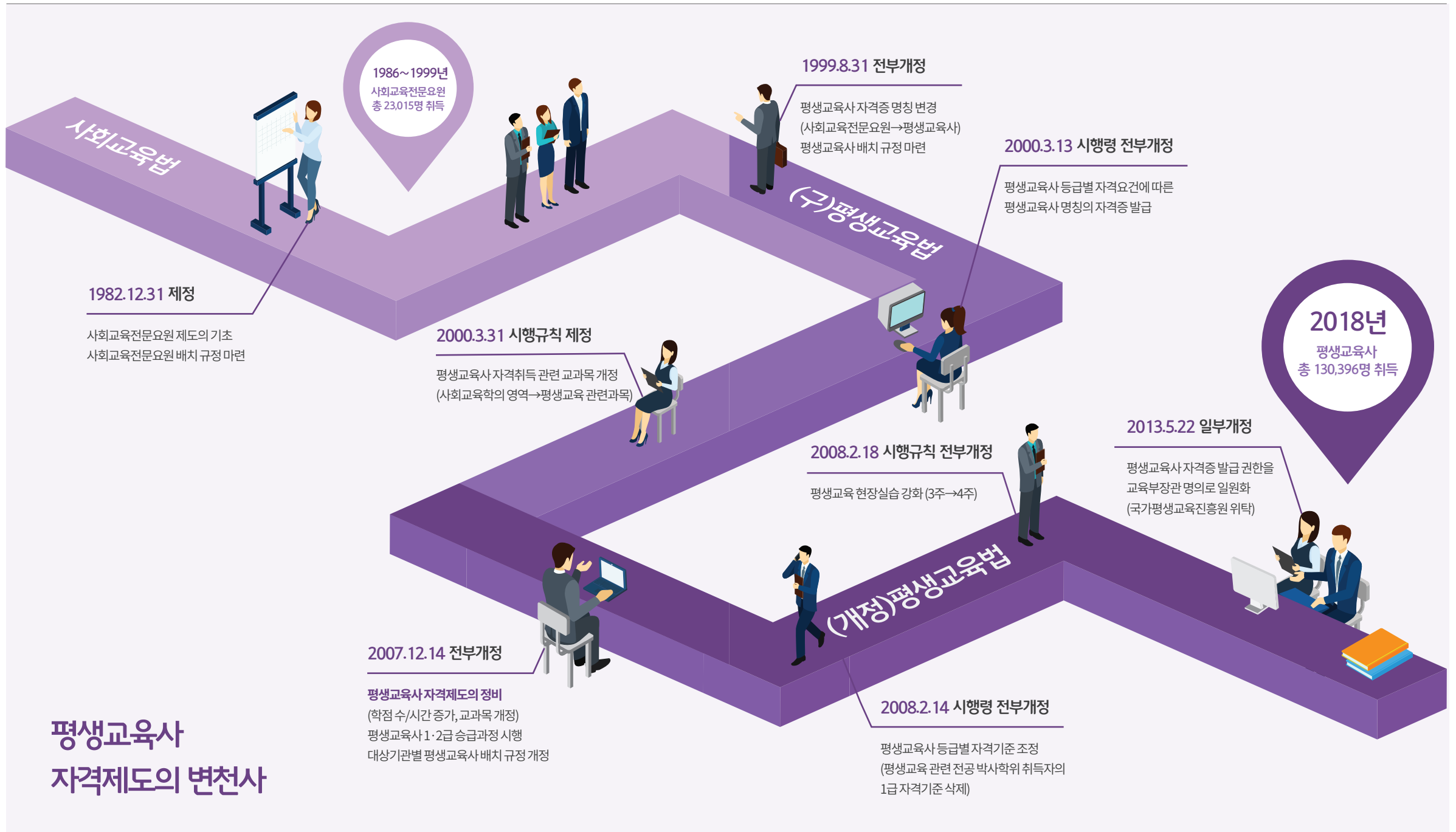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시·군·구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법 제30조~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 학점은행기관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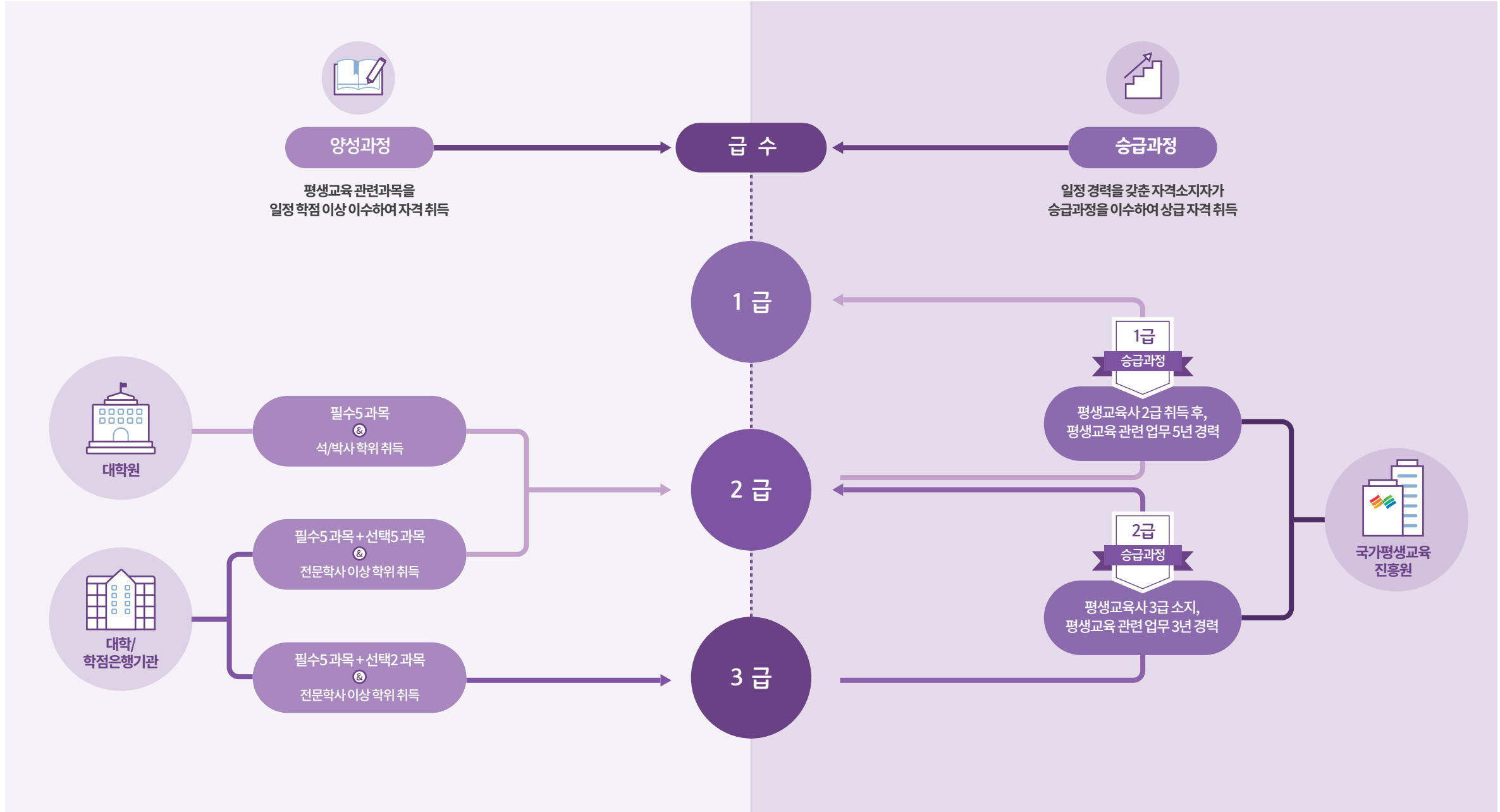
II. 평생교육사 자격제도의 이해



※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법 개정 이전의 법을 (구)평생교육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되며 이수과정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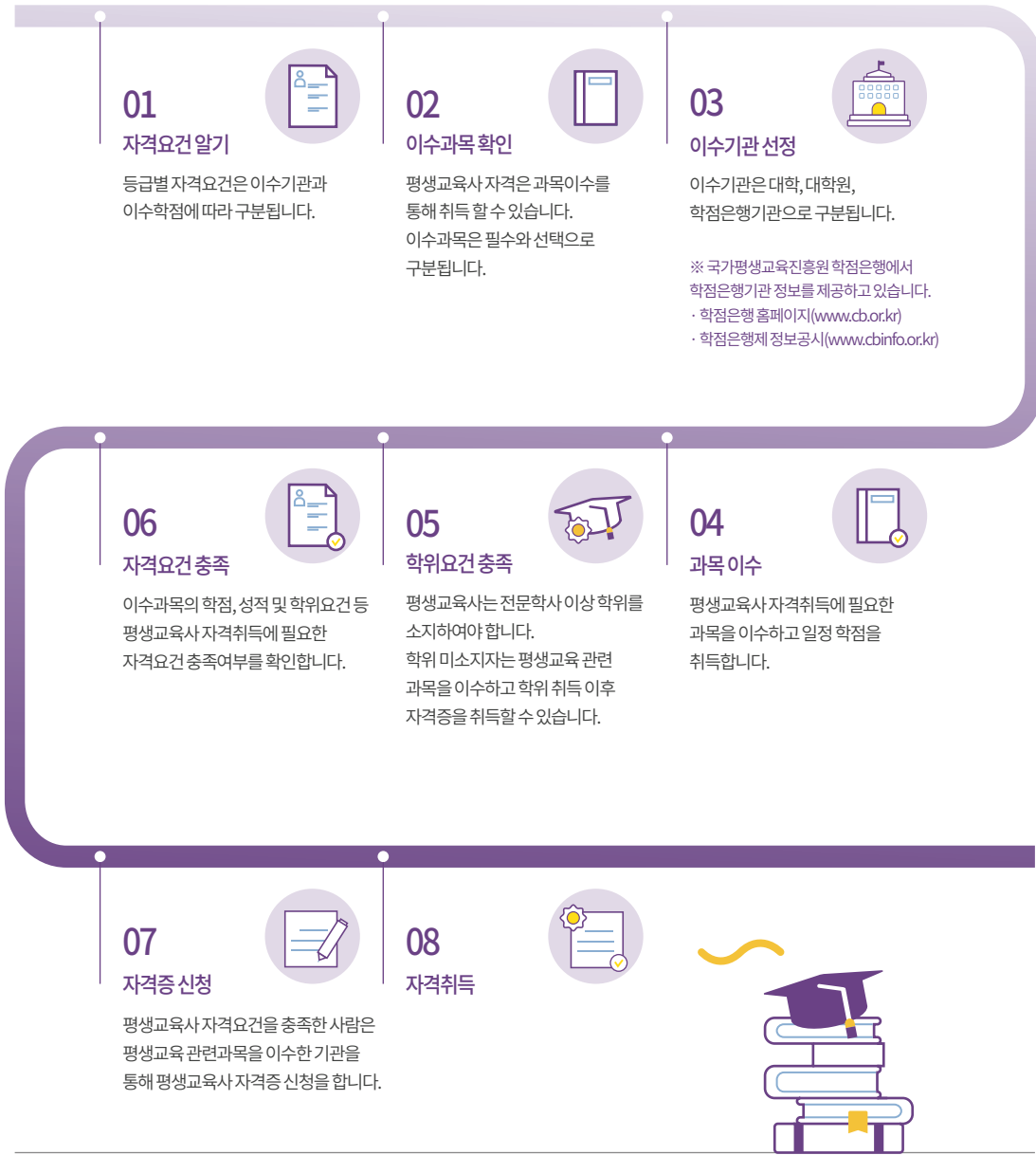
※ 이수과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됩니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평생교육사 2급, 3급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흐름도




10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안내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2급		
 대학원	1호 대학원 재학생 필수5과목(총 15학점) ※대학원 개설 교과목에 한함 Ⓢ 석/박사 학위 취득	
 대학 * / 학점은행기관	2호 대학 재학생 /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필수5과목+선택5과목(총 30학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3호 대학(원)졸업생 /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필수5과목+선택5과목(총 30학점)

3급		
 대학 * / 학점은행기관	1호 대학 재학생 /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필수5과목+선택2과목(총 21학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2호 대학(원)졸업생 /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필수5과목+선택2과목(총 21학점)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합니다.

11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안내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평생교육사 2급, 3급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련과목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한 5과목이고
선택과목은 평생교육 실천영역의 8과목, 평생교육 방법영역의 13과목으로 총 21과목입니다.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현장실습 포함)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하여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선택과목

실천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방법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2급은 선택 5과목, 3급은 선택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선택과목은 각 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실습

예비평생교육사가 학습한 이론과 기술을 평생교육현장에 적용하여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과정입니다.

선수과목	· 대학/학점은행기관: 필수 4과목 · 대학원: 필수 3과목 이상
이수기관	이수기관은 실습과목OT를 필히 실시해야 하며,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부터 실습기관 선정, 평가까지 현장실습 전반에 대한 관리를 수행합니다.
실습시간	4주간(20일, 160시간 이상)
실습기관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실습지도자의 실습지도가 이루어집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에서 실습생 모집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과목의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 신청 및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입학연도 및 이수한 과목에 따라 (구)평생교육법상 자격요건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구)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중 졸업생은 (구)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재학 당시 일부라도 이수하였다면 적용됩니다.

1급	
 대학원	2007년까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평생교육 관련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2급	
 대학원	1호 2008년까지 입학한 대학원 재학생 필수7과목(총 14학점) ※대학원 개설 교과목에 한함
 대학*	2호 2008년까지 입학한 대학 재학생 필수7과목+선택3과목(총 20학점) ⊗ 학사 학위 취득
	3호 2008년까지 입학한 대학 졸업생 필수7과목+선택3과목(총 20학점)
 전문대학	4호 2008년까지 입학한 전문대학 재학생 필수7과목+선택8과목(총 30학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5호 2008년까지 입학한 전문대학 졸업생 필수7과목+선택8과목(총 30학점)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급		
 전문대학	1호 2008년까지 입학한 전문대학 재학생 필수7과목+선택3과목 (총 20학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2호 2008년까지 입학한 전문대학 졸업생 필수7과목+선택3과목 (총 20학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평생교육법과 (개정)평생교육법은 혼용되지 않습니다. · (구)평생교육법은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자격요건이 적용됩니다. · 졸업생은 재학 당시 (구)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일부라도 이수하였다면 (구)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이 적용됩니다. · 재학 당시 관련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11페이지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이 적용됩니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입학연도 및 이수한 과목에 따라 (구)평생교육법상 자격요건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관련과목

필수과목	과목2 * (~2002년 2월 이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인정)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방법론 (또는 산업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사회교육개론, 사회교육방법론, 사회교육학, 사회교육자료개발(론), 사회교육행정론, 사회교육과 특수교육(학), 사회교육법규(론), 성인·청소년지도, 사회교육통계(학), 평생교육론,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 사회교육과 여가, 사회교육과정 및 평가, 사회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사회교육과 사회문제(론), 사회학개론, 사회심리학, 사회사업론, 산업심리학, 사회복지론, 청년심리학, 사회조사방법, 성인심리학, 산업사회학, 노인심리학, 농촌사회학, 교육심리학, 도시사회학, 상담심리학, 사회정책, 아동심리학, 지역사회 개발론, 교육사회학, 도서관학, 박물관학, 여성학, 노인학, 산업교육론, 직업윤리, 인력개발론, 산업교육과정론, 직업기술교육, 조직이론, 직업교육방법, 레크리에이션지도(또는 레크리에이션지도), 직업교육과정 및 평가
선택과목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 과목2는 구법의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 과목당 2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도 자격증 신청 시 각 2학점으로 산정됩니다.
- 이수과목의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 신청 및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구)평생교육법과 (개정)평생교육법은 혼용하여 적용되지 않으니 관련과목 이수 시 각 법령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 (구)평생교육법 대상자가 추가로 과목을 이수할 경우 (개정)평생교육 관련과목 중 인정 가능한 (구)평생교육 관련과목만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 (개정) 평생교육 관련과목인 '교육사회학', '상담심리학' 등을 새롭게 이수하여도 (구)평생교육 관련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 평생교육법 대상자가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행 학습과목

	(구)평생교육 관련과목	(개정)평생교육 관련과목
필수과목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성인학습 및 상담론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원격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성인학습 및 상담
선택과목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노인교육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학점은행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 학점은행제 정보공시(www.cbinfo.or.kr)

(구)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실습



(구)평생교육법 대상자는 평생교육실습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현장실습 형태로 실습기관에서 3주 120시간 이상 평생교육실습을 진행합니다.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시설 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은 자격취득자가 일정 요건에 충족할 경우 상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하는 연수과정입니다.

STEP 1

승급과정 신청자격요건 충족

- 1급 승급과정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급 자격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급 승급과정은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3급 취득 전후 경력 모두 인정)'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2

승급과정 신청 및 심사

-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운영 일정은 매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연수일정 및 신청서류 등은 당해 연도 공고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 당해 연도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이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연수 참가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평생교육 관련업무 종사기간 경력 인정방법은 당해 연도 공고 내용 참고 바랍니다.

STEP 3

승급과정 이수

-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의 연수가 진행되며, 연수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기준에 충족한 자에 한하여 승급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STEP 4

상급 자격취득

-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상위 급수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III. 평생교육증 자격증 신청 방법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을 합니다.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 신청 및 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서류

공통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특정) 1부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해당자별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학위 취득 관련 서류 · 외국국적자 관련 서류 · 경력증명서 1부(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에 한함)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1부

* 해당자별 구비서류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당해연도 자격증발급 신청공고참고 바랍니다.

평생교육법 제 24조제3항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조항이 이루어지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

- 제24조의2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류

공통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1부
해당자별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 시: 평생교육사 자격증 원본 1부 · 성명 정정 시: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해당자별 구비서류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edu.nile.or.kr) → 열린광장 → 공지사항 → 자격증 재발급 및 전환발급 신청 안내 게시글 참고 바랍니다.



IV. 자주하는 질문

Q 평생교육 관련과목은 어디에서 공부할 수 있나요?

A.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학점은행기관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 · 학점은행제 정보공시(www.cbinfo.or.kr)



Q 평생교육실습은 언제든 이수 가능한가요?

A. 대학 및 학점은행기관에서 이수 시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을, 대학원에서 이수 시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Q 이수과목당 성적이 80점 이상 되어야 하나요?

A. 이수과목당 80점 이상이 아닌,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과목의 전체 평균이 80점 이상되어야 합니다.



Q 고등학교 졸업자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학위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나요?

A. 네, 평생교육사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학위 미소지자는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학위 취득 이후 자격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대학원 석사 학위 소지자로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 합니다. 필수 5과목만 이수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대학원 과정이 아닌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다면 필수 5과목, 선택 5과목 총 10과목(30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Q (구)평생교육법 대상자와 (개정)평생교육법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모든 사람이 (개정)평생교육법의 대상이지만 다음 대상자에 한해 (구)평생교육법상 자격요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평생교육법	~2007년도 대학원 평생교육 관련전공 박사과정 입학생
	~2008년도 입학생으로 (구)평생교육법상 관련과목을 재학 당시 일부라도 이수한 자



Q (구)평생교육법 대상자입니다. (개정)평생교육법 자격요건에 따라 과목 이수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개정)평생교육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거 이수한 과목이 (개정)평생교육 관련과목일지라도 2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각 3학점**으로 이수하였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